※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할 것
- 5.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합법적으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풀이할 것

【문제 1】(25점)

다음은 거주자 갑, 을, 병, 정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물음 1) ㈜A(중소기업)의 전무이사 갑과 영업부장을의 2020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과 을은 5년 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다.

< 자료 >

1. 갑과 을이 ㈜A로부터 2020년에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아래 금액은 매월 균등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합산한 것임).

구 분	갑	이 교
기본급	70,000,000원	48,000,000원
성과급	20,000,000원	1,800,000원
식사대* ¹	1,560,000원	1,560,000원
자격증수당	_	240,000원
판공비	2,000,000원	-
자가운전보조금*2	3,000,000원	1,200,000원

- *1 을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갑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다.
- *2 갑과 을은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회사 사규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자가 운전보조금을 받았다.
- 2. 갑과 을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본인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A가 부담하였다.

구 분	갑	이 리
회사부담분	4,500,000원	2,000,000원
본인부담분	4,500,000원	2,000,000원

3. 갑과 을이 ㈜A로부터 받은 보상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갑	읔
직무발명보상금* ³	6,000,000원	4,000,000원
주택구입·임차 자금 무상대여 이익	1,000,000원	800,000원

*3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다.

<요구사항>

갑과 을의 총급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갑의 총급여액	
을의 총급여액	

(물음 2)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병(복식부기의무자)의 2020년 사업소득 손익계산서 자료이다.

< 자 료 >

병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00,000,000원이며, 다음 항목이 수익 또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1. 이자수익

구 분	급 액
비영업대금의 이익*1	10,000,000원
외상매출금* ² 회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500,000원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20,000,000원
공익신탁의 이익	1,500,000원
비실명 이자소득*3	800,000원
합계	32,800,000원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이자가 아니다.
- *2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다.
- *3 금융실명제 대상이 아니다.

2. 인건비

구 분	금 액
대표자 병의 급여	50,000,000원
종업원 급여	3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

- 3. 사업용 건설기계(굴삭기) 처분이익(2018년 12월 31일 취득): 5,000,000원
- 4. 산업재산권 양도이익: 3,000,000원

<요구사항 1>

병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과 이자소득 (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요구사항 2>

병의 사업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가산조정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차감조정			
,	포요경비산입 사업소득금액		

(물음 3) 정의 2020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

구 분	나이	내 용
본인	42세	총급여액 80,000,000원
배우자	39세	소득 없음
부친	74세	양도소득금액 10,000,000원
장인	73세	장애인, 소득 없음
딸	17세	고등학교 재학 중, 소득 없음
아들	0세	2020. 4. 1. 출생, 소득 없음
위탁아동	10세	7개월 양육, 소득 없음
동생	35세	장애인, 소득 없음

2.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모두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구 분	금 액
	본인의 정당 기부금 (정치자금세액공제 적용)	300,000원
	본인의 신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2,000,000원
신용 카드	본인의 가전제품 구입	19,900,000원
사용액	배우자의 국외 사용	900,000원
	장인의 대중교통 이용	200,000원
	동생의 도서·공연 사용	800,000원
기타	배우자의 전통시장 현금 영수증 사용	1,500,000원
사용액	부친의 직불카드 사용	5,500,000원

3. 의료비 지출내역

구 분	금 액
본인의 건강진단비	1,200,000원
본인과 배우자의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각 400,000원)	800,000원
배우자의 출산 병원비	1,000,000원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0,000원
부친의 건강증진용 약품구입비	900,000원
장인의 보청기 구입비	2,000,000원
딸의 허리디스크 수술비	10,000,000원
딸의 미용성형수술비	2,000,000원
동생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000,000원

<요구사항 1>

정의 인적공제액과 자녀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인적	기본공제액	
공제액	추가공제액	
자녀세액공제액		

<요구사항 2>

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신용카드	40%공제율 적용대상	
등	30%공제율 적용대상	
사용금액	15%공제율 적용대상	
신용카드	. 등 사용 소득공제액	

<요구사항 3>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신청한 정의 의료비세액 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의료비 세액공제액	

【문제 2】(5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부담부증여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 1. 갑은 2010년 5월 20일 취득한 토지(등기됨)를 아들을 (29세)에게 2020년 8월 13일에 증여하였다. 증여한 토지에는 갑이 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을은 토지를 증여받고 동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 2. 증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은 다음과 같다.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확인되지 않음	200,000,000원	180,000,000원

3. 증여한 토지의 증여당시 가액은 다음과 같다.

시가	기준시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500,000,000원	400,000,000원	250,000,000원

- 4. 증여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5. 을은 갑(부친)으로부터 처음 증여를 받았으며, 모친으로부터 2017년 3월 14일 현금 80,000,00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요구사항 1>

토지 증여로 인한 갑의 양도차익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의 필요경비	
양도차익	

<요구사항 2>

토지 증여에 따른 을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증여세 과세가액	
----------	--

【문제 3】(15점)

(물음 1) 다음은 <u>상호 독립적인</u> 각 과세사업자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 자 료 >

1. ㈜A는 다음과 같이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 분	기계장치A	기계장치B ^{*1}
계약금	10,000,000원 (2020. 3.20.)	8,000,000원 (2020. 5.20.)
중도금	10,000,000원 (2020. 6.20.)	8,000,000원 (2020. 8.20.)
잔 금	10,000,000원 (2020. 9.20.)	8,000,000원 (2020.11.20.)
인도일	2020. 3.20.	2020.11.20.

- *1 2020년 5월 20일에 계약금만 수령하고 기계장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2. ㈜B는 2020년 4월 4일에 장부가액 25,000,000원인 기계장치A(시가 20,000,000원)를 개인사업자 갑의 기계장치B(시가 불분명)와 교환하였다. 교환시점의 기계장치B의 감정가액은 19,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7,000,000원이다.
- 3. ㈜C는 외국에서 반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이다. ㈜C는 보세구역 밖에 있는 국내사업자 갑과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제품을 공급하였다.
- ① 제품A(인도일 2020년 4월 25일)를 사업자 갑에게 10,000,000원에 공급하였다. 이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5,000,000원, 관세는 500,000원, 개별 소비세는 1,500,000원이다.
- ② 제품B(인도일 2020년 6월 25일)를 사업자 을에게 20,000,000원에 공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관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1,700,000원이다.

4. ㈜D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겸용주택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고 있다. 겸용주택은 2층 건물로 1층 (500㎡)은 상가로, 2층(500㎡)은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부수토지면적은 3,000㎡이다. 각 층의 면적에 지하층 및 주차용 면적은 제외되어 있다.

① 임대계약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020. 4. 1. ~ 2022. 3.31.
월임대료	2,000,000원
임대보증금	146,400,000원* ²

- *2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155,2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 ② 2020년 6월 30일 현재 겸용주택의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내역

구 분	감정가액	기준시가
토 지	250,000,000원	160,000,000원
건 물	150,000,000원	160,000,000원
합 계	400,000,000원	320,000,000원

- ③ 2020년 6월 30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8%이다.
- 5. ㈜E는 2020년 5월 30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국 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갑과 을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제품을 인도한 후,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였다.
- ① 제품A(공급가액 10,000,000원)를 갑에게 인도 하였으며, 갑은 제품A를 그대로 외국법인에 반출하였다.
- ② 제품B(공급가액 20,000,000원)를 을에게 인도 하였으며, 을은 제품B 중 70%를 과세사업에, 30%를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요구사항>

각 사업자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2020년은 366일이다.

(답안 양식)

구 분	과세표준		
	과세	영세율	
(주)A			
(주)B			
(주)C			
(주)D			
(주)E			

(물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자료 >

1. 다음은 ㈜한국이 2020년 3월 20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내역이다. 아래 자산 중 건물과 토지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용자산이며, 다른 자산은 과세사업 전용자산이다.

구 분 ^{*]}	취득일	취득가액	시가
원재료	2019.12. 5.	10,000,000원	7,000,000원
건 물	2017. 7.15.	80,000,000원	90,000,000원
토 지	2012.10. 5.	40,000,000원	80,000,000원
차 량	2019. 2.19.	30,000,000원	18,000,000원
기계장치	2019. 7.10.	20,000,000원	15,000,000원
비 품	2017. 9.13.	5,000,000원	2,000,000원

- *1 위 자산 중 토지와 차량(소형승용차)은 매입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자산은 매입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2. ㈜한국은 2020년 1월 10일 제품을 인도하고 1월
 31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총 12회에 결쳐 대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건 이외에
 2020년 제1기의 과세매출은 없다.

3. 각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19년 제2기	80%	20%
2020년 제1기	70%	30%

<요구사항>

㈜한국이 2020년 3월 20일에 폐업하는 경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 재화별로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구 분	과세표준
원재료	
건 물	
토 지	
차 량	
기계장치	
비 품	
제 품	
합 계	

【문제 4】(5점)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수취되었다.

< 자 료 >

1. ㈜대한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19년 제1기* ¹	500,000,000원	
2019년 제2기	600,000,000원	200,000,000원
2020년 제1기	700,000,000원	300,000,000원
2020년 제2기	600,000,000원	400,000,000원

- *1 2019년 제1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은 각각 240,000,000원(전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과 60,000,000원이다. 이 매입가액에는 공통매입가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 ㈜대한은 2019년 4월 15일 기계장치A를 40,000,000원에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구입 당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예정 공급가액 비율은 35:65이다.
- 3. ㈜대한은 2020년 10월 20일 기계장치A를 2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요구사항 1>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요구사항 2>

2019년 제2기 확정신고시 기계장치A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정산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정산액이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면 (+), 감소시키면 (-) 부호를 금액과 함께 기재하시오.

(답안 양식)

<요구사항 3>

2020년 제1기와 제2기의 기계장치A에 대한 납부(환급) 세액 재계산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재계산액이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면 (+), 감소시키면 (-) 부호를 금액과 함께 기재하시오.

(답안 양식)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	

<요구사항 4>

2020년 제2기의 기계장치A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과세표준		과세표준	
------	--	------	--

【문제 5】(25점)

(물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백두의 제20기 사업연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 1. ㈜백두는 2020년 3월 1일에 대표이사로부터 토지A를 1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매입 당시 토지A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70,000,000원, 개별공시지가는 80,000,000원, 지방세시가표준액은 60,000,000원이다.
- 2. ㈜백두는 2020년 5월 5일에 최대주주(지분율 5%)인 갑(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B 1,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였다. 비상장주식B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1주당 6,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평가가액은 1주당 7,000원이다.
- 3. ㈜백두는 2019년에 전무이사로부터 토지C(시가 70,000,000원)를 1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대한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백두는 2020년 12월 1일에 토지C를 150,000,000원에 매각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현금 150,000,000

(대)토지C 10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0

- 4. ㈜백두는 전기말에 비상장주식D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였다. 당기 중 제3자간에 비상장주식D가 주당 12,000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간주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

5,000,000

(대)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5,(

5,000,000

< 요구사항 >

㈜백두의 제20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자료 번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번호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1						
2						
3						
4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라의 제20기사업연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이루어졌다.

< 자 료 >

- 1. 보유주식 ㈜A
- ① ㈜한라는 비상장법인 ㈜A의 주식 6,000주(액면 가액 1,000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취득일	주식수	비고
2014. 6. 5.	3,000주	1주당 10,000원에 유상 취득
2016. 9. 8.	2,000주	㈜A의 이익준비금 자본 전입으로 취득
2018. 5.22.	1,000주	㈜A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취득
합 계	6,000주	

- ② ㈜A는 2020년 4월 11일에 총발행주식의 20%를 1주당 15,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소각하였다.
- 2. 보유주식 ㈜B
- ① ㈜한라는 2019년 5월 29일에 비상장법인 ㈜B의 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취득하였다. 이는 ㈜B 총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한다.
- ② 2020년 9월 1일 ㈜B가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한라는 무상주 1,000주를 수령하였다. 잉여금 자본전입결의일은 2020년 8월 1일이다.
- ③ 자본전입결의일 현재 ㈜B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10,000주이다.
- ④ ㈜B의 주주 중 ㈜한라의 특수관계인은 없으며, 자본전입에 사용된 재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주식발행초과금	6,0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처분일 2017. 3. 1.)	2,000,000원
자기주식소각이익 (소각일 2018.10.15.)	4,000,000원
이익준비금	8,000,000원
합계	20,000,000원

<요구사항>

㈜한라의 제20기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의제배당액
(주)A	
(주)B	

(물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태백의 제20기 사업연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 1.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르면 상여금은 일반급여의 30%이며, 인건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반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대표이사	150,000,000원	40,000,000원	_
상무이사*1	10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회계부장	50,000,000원	100,000,000원	_
기타 직원	450,000,000원	250,000,000원	300,000,000원*2
합 계	750,000,000원	440,000,000원	400,000,000원

- *1 상무이사는 2017년 6월 15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으며, 당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규정이 없다.
- *2 기타 직원의 퇴직급여 중 200,000,000원은 실제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것이며, 100,000,000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 ②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의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40,000,000원이며, 이는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 2. 손익계산서상 기타경비
- ① ㈜태백의 지배주주인 갑(지분율 5%, 임직원 아님) 에게 지급한 여비 5,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 하였다.
- ② 비출자공동사업자인 ㈜A(특수관계인 아님)와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업의 경비는 각각 50%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당기에 발생한 공동 경비 20,000,000원을 ㈜태백이 전액 부담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③ 환경미화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취득가액 6,000,000원)을 복도에 전시하고 소모품비로 계상 하였다.
- ④ 대표이사(지분율 10%)가 사용하고 있는 사택유지비 9,000,000원과 회계부장(지분율 0.5%)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유지비 3,000,000원을 비용으로계상하였다.

<요구사항 1>

㈜태백의 제20기 <u>인건비</u>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역	입 및 익	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요구사항 2>

㈜태백의 제20기 <u>기타경비</u>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역	입 및 익	금불산입
고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소득처분		

(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백(중소기업 아님)의 제20기 사업연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자 료 >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이며,
 이 중 3,000,000,000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된 접대비는 105,3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건당 1만원 이하	건당 1만원 초과	합 계
영수증 수취건	2,500,000원	12,800,000원	15,300,0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건*1	15,000,000원	75,000,000원	90,000,000원
합 계	17,500,000원	87,800,000원	105,300,000원

- *1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한 금액 5,000,000원과 미술품 1점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한 금액 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3. 손익계산서상 잡손실로 계상된 접대비 15,000,000원은 건당 1만원을 초과하며, 적격증명서류가 없다. 이 중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국외지역에서 지출되어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6,000,000원이다.

- 4. 거래처인 ㈜A에 직접 생산한 제품(원가 5,000,000원, 시가 6,000,000원)을 접대목적으로 무상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차) 광고선전비5,000,000세금과공과600,000

(대) 제품5,000,000부가세예수금600,000

5. 접대비 수입금액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5/10,000
500억원 초과	6/10,000

<요구사항>

㈜소백의 제20기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시부인		
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액	
한도액	문화접대비 한도액	
접대		

(물음 5) 다음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설악 (중소기업 아님)의 제20기 사업연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설악의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잔액은 12,460,000,000원이며,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과 목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5,000,000원
매출채권 대손부인액* ¹	48,000,000원
소멸시효 완성채권	△8,000,000원

- *1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은 모두 당기에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 2. ㈜설악의 제20기 대손충당금계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당기상계 200,000,000원 전기이월 250,000,000원
차기이월 280,000,000원 당기설정 230,000,000원
합계 480,000,000원 합계 480,000,000원

- 3. 대손충당금 당기상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8,000,000원
- ② 당기 3월 1일에 부도가 발생하여 받을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 25,000,000원
- ③ 당기에 채무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미수금: 12,000,000원
- ④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55,000,000원

4.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12,700,000,000원
수탁판매한 물품의 판매대금 미수금	500,000,000원
원재료 매입을 위한 선급금	1,100,000,000원
토지 양도 미수금*2	600,000,000원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여금	100,000,000원
합 계	15,000,000,000원

*2 특수관계인 ㈜A에게 시가 400,000,000원인 토지를 6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다.

<요구사항 1>

(주)설악의 당기 대손실적률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대손실적률 계산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제시하시오.(예: $2.567\% \rightarrow 2.56\%$)

(답안 양식)

당기 대손금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	
당기 대손실적률	

<요구사항 2>

㈜설악의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u>당기 대손실적률은</u> 1.60%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문제 6】(15점)

(물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및 제20기 사업연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 료>

- 1. ㈜한국은 2019년 1월 10일 사용하고 있던 기계 장치A를 다른 기업의 동종 기계장치B와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교환당시 기계 장치B의 시가는 20,000,000원이다.
- (차) 기계장치B 2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 (대) 기계장치A 28,000,000기계장치처분이익 1,000,000
- 2. 기계장치B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이며 주기적 수선에 해당하지 않음)로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모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구 분	금 액
제19기	4,000,000원
제20기	5,000,000원

- 3. 제20기말 기계장치B에 대한 회수가능가액을 검토하여 3,000,000원의 손상차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해당 손상차손은 물리적 손상에 따른 시장가치 급락을 반영한 것이다.
- 4. 제19기와 제20기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감가 상각비는 각각 5,000,000원이다.

5.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다. 내용연수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	6년	8년	10년
정액법	0.166	0.125	0.100
정률법	0.394	0.313	0.259

<요구사항>

㈜한국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	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제19기							
제20기							

(물음 2) ㈜한국(영리내국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말에 해산등기하였고, 청산절차에 착수하였다.

<자 료>

1. ㈜한국의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환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부채는 재무 상태표상 금액인 565,000,000원에 상환하였다.

구 분	장부가액	환가액	
현금·예금	15,000,000원	15,000,000원	
토 지	250,000,000원	450,000,000원	
건 물	400,000,000원	280,000,000원	
기계장치	100,000,000원	60,000,000원	
합 계	765,000,000원	805,000,000원	

2.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입일	금 액
2019. 2.25.	30,000,000원
2017. 2.28.	50,000,000원

3.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한국의 자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자본금	180,000,000원
이익잉여금	20,000,000원

- 4. 당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잔액은 50,000,000원이다.
- 5. 당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말잔액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00,000원
토지 자본적지출	20,000,000원

<요구사항>

㈜한국의 청산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금 액
잔여재산가액	
자기자본	
청산소득금액	

【문제 7】(10점)

(물음 1) 다음은 2020년 6월 6일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 1. 상속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택: 300,000,000원

아들과 동거한 주택으로 법에서 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② 생명보험금: 600,000,000원

생명보험금의 총납입보험료는 120,000,000원으로 갑이 부담한 보험료는 80,000,000원이며 나머지는 상속인이 부담한 것이다.

- ③ 예금: 800,000,000원
- 2. 갑이 사망 전 처분한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처분일	처분금액	용도입증금액
토	지	2020. 2. 5.	250,000,000원	210,000,000원
건	물	2019. 5.12.	450,000,000원	250,000,000원
주	식	2019. 7.25.	300,000,000원	60,000,000원

3. 상속개시 전 증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증여일	증여일 시가	상속개시일 시가
아 들	2009.11. 1.	50,000,000원	200,000,000원
딸	2013. 5.12.	70,000,000원	140,000,000원
친 구	2017. 3.10.	30,000,000원	80,000,000원

- 4. 상속개시일 현재 갑의 공과금과 채무는 없으며, 장례비용은 12,000,000원(봉안시설 비용 제외), 봉안시설 비용은 7,000,000원으로 모두 증명서류에 의해 입증된다.
- 5. 갑의 동거가족으로 배우자(75세), 아들(35세), 딸 (28세)이 있으며,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요구사항>

갑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금 액
총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공제액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액	
상속세과세표준	

(물음 2) 다음은 을의 증여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 1. 거주자 을은 비상장법인 ㈜무한의 최대주주 병 (지분율 70%)으로부터 2018년 5월 1일 ㈜무한의 주식 1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을과 병은 특수관계인이다.
- 2. ㈜무한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20년 3월 5일 최초로 매매가 시작되었다. ㈜무한 주식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020. 3. 5.	15,000원
2020. 6. 5.	25,000원

3. 을의 주식 취득 이후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6,000원이다.

<요구사항>

을이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증여재산가액	

여 백